

#### **VIII. 입학수속 및 미등록자 처리방법**

1. 합격증을 교부받고 입학수속 기일 내에 등록하지 않은 자는 합격을 취소한다.
2. 미달로 인해 결원이 생길 경우에는 1차 추가모집을 할 수 있으며 전형방식은 동일하다.

#### **IX. 특수교육대상자의 전형**

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 받은 자는 「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」 제15조, 제17조에 의거하여 본교 입학전형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수학능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학교장 의견서를 첨부하여 경기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 신청한 자에 한하여 심의를 통하여 정원외로 선배치한다.